

議案番號	第288號
議決年月日	1995. 7. 31 (第35回)

議 決 事 項	수정 시급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

固城郡發展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(案)

提出者	固城郡守
提出年月日	1995. 7. 15.

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28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7. 15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고성군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·조사·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관계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고성군 발전 주요현안 및 채정확충 방안등에 대한 조사·연구(안 제3조)
- 나. 위원회의 기금은 군 및 그외의 출연금으로 조성(안 제7조)
- 다. 자체기금이 확보될때까지 운영비 군에서 지원(안 제8조)
- 라.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 근무(안 제9조)

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조례는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설치하여 고성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·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소) 위원회의 사무소는 고성군청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군 발전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
2. 군 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·연구
3.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인의 감사 위원을 둔다.

② 위원장은 필요시 2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④ 위원은 군실과사업소장 및 각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지도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 개최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.

② 정기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.

제7조(기금) ①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운영기금은 군 및 그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.

제8조(운영비) 군은 위원회의 자체 운영기금이 확보될때까지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공무원의 파견)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소속 공무원을 파견할수 있다.

제10조(운영규정) 이조례에 정한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11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② 간사와 서기는 스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.

제12조(수당지급등) ① 위원회의 직원수당과 연구위원에 대한 연구비는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하여는 운영비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③ 수당 및 연구비 지급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3조(규칙)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